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미국의 지원과 ‘용병(傭兵) 주장’ 분석

崔 容 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머 리 말
2. 용병의 개념과 용병주장
3. 파병 협상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
4. 전투수당 및 경제적 지원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95년 5월 10일,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숙희씨는 국방대학원 초빙 강의를 통해 “군은 평시에 명분 있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6·25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이었고, 월남전은 용병(傭兵)으로 참전해 명분이 약했다”라고 발언해 결국 장관직에서 해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¹⁾ 그러나 김 장관이 물러난 후에도 일부 학자들이 김장관의 용병주장을 승계하여 “베트

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국군이 미국의 용병이었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용병’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 스포츠 분야와는 달리 본래의 의미인 군사적 측면에서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보다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용병’이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전장(戰場)에 투입되는 군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몸값을 다하기 위해 매우 잔혹한 행동을 하는 군인들을 연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참전용사들을 “미국의 용병이었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명예 의해 파병되었던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들은 ‘자유의 십자군’과 ‘미국의 용병’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로 인해 가치관의 혼동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용병의 개념과 그 배경을 보다 심층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필자(筆者)는 용병의 기본개념과 함께 일부 학자들이 용병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한·미 정부의 협상 과정과 함께 자료위주로 제시하여,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용병의 개념과 용병주장

(1)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와 용병(傭兵)의 개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방위를 위한 병역(兵役)제도로 일정한

1) 『세계일보』, 1995. 5. 13 종합뉴스 1면.

조건을 갖춘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각종병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²⁾ 우리나라도 헌법 제39조에서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병역법에 의한 징병(徵兵)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병역의무자에게 조기 입영의 길을 열어주고, 일부 특수분야의 충원을 위해 부분적으로 모병(募兵)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근간(根幹)은 강제 징집에 의한 징병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범위는 극히 제한된다.

반면 '용병(傭兵, Mercenary Soldier)'이란 "강제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투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³⁾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용병은 전투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단체가 이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일정한 보수를 대가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전투임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병은 돈만 많이 준다면, 적이나 아군을 가리지 않고 고용자를 수시로 바뀌가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전투임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또한 용병은 생명을 담보하여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수는 일반인들의 보수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용병을 고용한 국가나 단체가 고용한 용병을 자국민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투지역에 투입하고, 보수의 대가를 다하도록 임무수행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⁴⁾

용병제도는 고대와 중세로부터 자국민의 보호 또는 부족한 병력 보충을 위해 흔히 쓰여져 오던 제도였다. 그리스 말기의 도시국가에서 고용했던 용병, 로마제국 말기의 게르만 용병, 중세말기의 유럽 신흥도시나 절대군주들이 고용한 용병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 같은 용병제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유럽에서 프랑

2) 계몽교육정보, *CD-ROM 백과'98*, 1998, Key Word '국민 개병주의': 국민 개병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강제 징병제도가 아닌 자유의사에 의한 모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징병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2001. 12. 7, p. 26.

4) 동아출판사, 『원색 세계백과사전(제21권)』, 1983, pp. 630~631.

스 혁명 이후 국민개병주의에 의한 징병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용병은 일부 유럽국가들이 식민지(植民地) 정복과 지배 등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었는데, 프랑스는 오늘날에도 용병으로 8,500명 규모의 '외인부대'를 보유하고 있다.⁵⁾

유럽국가들의 용병부대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운용했던 아프리카 외인부대(the Foreign Legion)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주민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식민주의의 첨병(尖兵)이었으며, 인종차별과 압제의 전위(前衛)로 알려졌다. 또한 민족해방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자유전사를 살해하기 위해 고용된 '살인청부업자'로 간주되었다.

전쟁은 그것이 비록 자위(自衛)를 위한 것일지라도 하나의 필요악(必要惡)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쟁은 조국 방위상 부득이하다"라는 근거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병은 조국 방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방인(異邦人)이 오로지 개인적 이득, 주로 금전적 이득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살인과 파괴에 종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덕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⁶⁾

이에 따라 1967년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는 콩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용병들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으며, 1969년에는 모든 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외국인 용병 모집 및 훈련을 범죄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의 결의를 채택했다. 그리고 이 같은 여론에 따라 1977년 6월 8일, 채택된 제네바협약추가 제1의 정서 제47조는 '용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용병(傭兵)은 교전자(交戰者), 또는 포로(捕虜)가 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5) 이원복, 『군사문제용어』, 명성출판사, 2002, pp. 415~418; 프랑스에는 1995년 현재, 현역 육군 24만명 중에는 8,500명의 외인부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외인부대는 보병 6개 연대와 기갑, 공수, 공병 각각 1개 연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6) 김찬규, 『전쟁법상의 새로운 개념』, 『경희대경희법학(제19권 1호)』, 1984, p. 14.

2. 용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이다

-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지방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모집된 자
- 나. 적대행위에 사실상 직접 참가하는 자
- 다. 본질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욕망에 의해(Essentially by the desire for private gain) 적대행위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충돌 당사자로부터 또는 충돌당사자를 대신하는 자로부터 동 당사자의 군대 내의 동일한 계급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불되는 액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사실상 약속 받고 있는 자.
- 라. 충돌당사자의 국민도 아니고 충돌당사자가 지배하는 영토의 주민도 아닌 자
- 마. 충돌당사자의 군대구성원이 아닌 자
- 바. 충돌당사자의 국가가 아닌 국가에 의해 그 군대의 구성원으로써 공적임무를 띠고 파견된 것이 아닌 자⁷⁾

(2)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용병(傭兵)’주장

한국의 역사에서 ‘용병’의 문제가 오늘날처럼 회자(膾炙)된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베트남전쟁 이후 우리나라도 ‘용병’과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한편에서는 “자유의 십자군이었다”라고 평가하는가 하며, 한편에서는 “미국의 용병이었다”라는 주장이 뒤섞여 전쟁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전후세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조국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걸고, 열대의 정글에서 싸웠던 참전용사일 것이며, 그들의 가족일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가치관의 혼란은 차제에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용병이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7) 김찬규, 앞의 논문, p. 13.

한국군의 경우 미국에 의해 모든 경비가 지출되었고, 미국의 경비부담이 없었을 경우 파병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용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이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참전했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한국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은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폴브라이트 의원 등으로부터 “만약 한국군이 자신을 용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애국적 이유에서 파병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런 협정(해외복무수당 지급에 관한 약속 - 인용자)을 만들었는가?”라며 “한국은 우리의 요청과 촉구에 따라 좋은 상거래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⁸⁾

우리가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쟁에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하였고, '한국군들은 단지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하였을 뿐인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라는 원성을 들을 정도로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던 것이다"⁹⁾

이 같은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홍구 교수는 폴브라이트 의원의 주장을 빌어 “한국군이 미국이 지급하는 전투수당을 받고 참전했기 때문에 용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미국의 경비 지원이 없었다면, 절대 참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용병이다”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강정구 교수는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의 문장에서 “파병된 한국군이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은연중에 용병의 잔인성과 한국군을 연계시킴으로써, “한국군이 잔인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한국군이 미국의 주한 미군의 철수 위협과 경제지원을 빌미로 한 강요에 의해 파병되었다”라는

8) 한홍구,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그 빛과 그림자』, 베트남전 참전 재조명 세미나(2000. 12. 15), 군사평론가 협회·베트남전 진실위원회, pp. 65~66; 한홍구,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민간인 학살 문제』,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2000. p. 50.

9) 강정구, 『한국군 베트남 전쟁 참전과 베트남 민간인의 참상』, 베트남전 참전 재조명 세미나(2000. 12. 15) 발표자료, p. 47.

주장으로 ‘용병’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이 용병이었는가?”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그들 주장의 초점이 경제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하여, 4차례에 걸친 한국군 파병과정에서 한·미 정부의 협상 및 미국정부의 지원내용과 용병 주장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한국정부가 파병을 통해 얻었던 전투수당 및 경제적 효과와 용병 주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용병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작전권을 누가 행사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병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파병 협상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

(1) 한국군 파병의 배경과 용병주장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구체화된 것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5·16을 통해 집권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당면 과제는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단시간 내에 공고히 해야 했으며,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피폐된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 같은 정책수행을 위한 돌파구를 일본과 국교회복 및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한·일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 있는 국군의 파병을 위해 적극적인 대미 교섭에 나섰다.¹⁰⁾

10)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 162; 장재혁, 『제3공화국의 베트남

그러나 한·일 회담은 독도(獨島) 문제와 과거사(過去事) 사과(謝過) 등의 문제에 부딪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또한 국군의 파병제안 역시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함께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미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1964년 3월 17일, 미국은 베트남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결정하는 국가안보조치 메모(NSAM-288)를 승인했다. 이 때의 결정을 통해 미국정부는 베트남 정책의 목표를 “독립된 비공산 국가로써, 남베트남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산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서쪽으로 인도, 남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북동쪽으로는 타이완과 한국 및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¹¹⁾

미국은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¹²⁾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연합국가들의 지역 안보체제를 이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SEATO 가맹국들에게 남베트남의 공산화 저지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맹국인 프랑스와 파키스탄은 “남베트남이 SEATO 가맹국이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제의를 강력히 반대했다. SEATO를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전쟁 지원계획이 벽에 부딪치게 되자, 미국은 그 대안

파병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p. 28~35; 이기종, 『한국군 베트남참전의 결정요인과 결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p. 52~84.

11) Gravel Edition, *The Pentagon Papers : The Defence Department History of U.S. Decision-making on Vietnam vol. III*, Boston Beacon press, 1972, pp. 50~51; 정수용,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 동맹체제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p. 138 재인용.

12)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 South Asia Treaty Organization)는 아이젠하워 정부 주도하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SEATO의 가맹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 등 7개국이었다. 미국은 SEATO의 가맹국이 연합하여 공산주의에 의해 유도되는 민족해방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희망했다.

으로 남베트남을 지원할 자유우방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¹³⁾

“남베트남을 지원해 달라”는 존슨 대통령의 서한을 접수한 박정희 대통령은 김성은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존슨의 서한을 접수하기 전부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파병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이미 확정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존슨의 서한은 이를 공식화하여, 명분을 쌓는 것에 불과 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때부터 파병을 위한 조치를 공식화하면서 1964년 9월 11일, 제1차 파병으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을 파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군 파병의 배경을 볼 때, 보다 적극적으로 파병을 원했던 것은 미국정부가 아닌 한국정부였다.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의 요구보다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현실적 필요성과 미국정부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파병은 한국정부가 국가 이익(利益)의 차원에서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병 자체를 용병주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1·2차 파병(비전투부대)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용병주장

1) 비전투부대 파병 경과

제1차 파병을 결정한 한국정부는 파병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치고, 1964년 7월 9일, 김종오 합참의장을 주한미군사령관 하위즈(Hemilton H. Howze) 대장에게 보내 이동외과병원 130명, 태권도 교관 10명 등 140명 규모로 편성된 한국측의 파병안을 통보했다.

이어서 정부는 7월 15일, 당시 남베트남 정부의 응웬칸(Nguyen Kanh) 수상으로부터 파병요청 서한을 접수받았으며, 7월 31일, 국회의 본회의에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1상)』, 1978, p. 89.

파병동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동의받았다. 파병에 필요한 조치를 마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은 9월 11일 해군 LST편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22일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Saigon)에 도착했다. 사이공에서 태권도 교관단은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되고, 이동외과병원은 봉따우(Vung Tau)¹⁴⁾로 이동하여, 10월 10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제1차 파병이 완료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제1차 파병 준비가 한창일 때인 “1964년 8월 2일과 4일,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통킹(Ton Kin)만¹⁵⁾의 공해상에 정박중인 미 해군함정을 공격했다.¹⁶⁾ 그러자 8월 5일 미 항공모함이 통킹만의 해안지역에 급파되어 하이퐁(Hai Phong)¹⁷⁾ 일대를 목표로 집중적인 공중폭격과 포격을 가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표면에 나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었다.¹⁸⁾

베트남전쟁이 확대되자,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위해 보다 많은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했다. 또한 남베트남의 후방지역에서 전쟁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남베트남군까지 전선에 투입됨으로써, 후방지원 병력의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쯤인 1964년 10월 2일,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던 한·일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번디(William P.

14)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23km 떨어진 반도로, 년중 해수욕이 가능한 세계적인 휴양도시다. 당시 봉따우 지역에는 남베트남 육군정양병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동외과병원의 임무수행에 양호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15) 통킹(Ton Kin)만은 베트남 북부지역과 하이난섬(海南島) 사이에 위치한 만(灣)으로 베트남에서는 ‘빈박보(Vinh Bac Bo : 북부만)’라고 부른다.

16)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공해상에 정박중인 미 함정을 공격했다”는 미국의 발표와는 달리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군의 함정을 공격한 적이 없으며, 레이더 판독병의 실수였다”라는 주장도 있다.

17) 통킹만에 위치한 북베트남 최대의 항구로, 해상을 통한 대부분의 군수물자들이 반입되는 군사전략 항구였다.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1. 상)』, 1978, p. 46.

Bundy)가 박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번디 차관보가 베트남에서 미국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자, 박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이 우리에게 군사 협조를 요청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미국을 도울 용의가 있소”라고 화답함으로써, 비전투부대 뿐만 아니라 전투부대까지도 파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¹⁹⁾

이어서 1964년 12월 18일, 박대통령은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이에 박대통령은 김성은 국방부 장관을 불러 “이미 예상했던 일인만큼 신속히 부대를 편성하여 파월 준비를 갖추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했다.²⁰⁾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파병으로 자체경비 능력을 갖춘 후방건설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2,000명 규모의 비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이어서 1965년 1월 2일, 남베트남의 외무부장관 팜탕람(Pham Tang Lam)의 파병 요청서를 접수하고, 1월 28일에는 국회에 ‘국군의 해외 추가파병동의안’을 상정하여 동의 받았다.

이어서 국방부는 경기도 현리의 제6사단 사령부에서 주월(駐越) ‘한국군 사원조단’ 본부를 창설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뜻의 ‘비둘기부대’로 명명했다. 그리고 파병 준비를 마친 비둘기부대는 3월 10일 인천항을 출발하여 16일 사이공에 도착, 사이공 동북방 22km 지점의 지안(Di An)에 주둔하면서 후방지원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비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한·미 협상과정

한편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파병의 목적과 병력규모,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93 ;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pp. 167~168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pp. 116~117.

2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93.

운영 및 지원체제 등의 기본계획과 아울러 현지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과 부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각종 지원활동 등 보장되어야 할 요소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정부는 베트남의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병력을 파병해 본 경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140명 규모의 제1차 파병은 전투부대와는 달리 후방지역에서 활동할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단으로 그 임무가 단순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다. 따라서 7월 9일,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주한미군사령관 하워즈 대장을 방문한 김종오 합참의장은 단 한차례의 회담으로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를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7월 17일에는 두 번째의 회담을 통해 파병부대의 지원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① 베트남 현지에서 파견부대의 장비, 시설, 보급, 정비 및 급식 등 모든 군수지원은 미국측이 부담한다.
- ② 파견부대의 장비에 대한 봉급, 수당, 출장비는 한국이 부담한다.
- ③ 파견부대의 급식을 위한 취사도구와 한국인 특유의 기호품은 한국이 부담한다
- ④ 현지에서 구체적인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파월 전 실무접촉과 파월 선발대를 파견하여 현지협조를 통해 해결한다.²¹⁾

이와 같이 미국측과 협조가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는 파병에 필요한 1964년도(9월 1~12월 31일) 소요예산으로 14,857,900원을 책정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수당 10,808,700원, 피복비 476,800원, 수송중 식비 156,400원, 여비 1,363,000원, 관영요금 24,200원, 수용비 347,200원, 판공비 1,591,600원으로 편성하여 파병부대에 지급했다.²²⁾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91 :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3, pp. 80~81.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91 : 국방부, 해외파견 군인의 특수근무 수당 지급

한편 국방부는 파병부대의 현지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합참 군수기획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훈섭 준장을 선발대장으로 임명하고, 한국군 장교 3명과 미군장교 2명을 실무장교로 편성하여 현지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협상에 임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병부대가 주둔할 위치를 결정하는 것과 부대운영 및 각종 군수지원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선발대는 8월 26일,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Saigon)에 도착했으며, 남베트남에서 발생한 '8월정변'²³⁾의 와중에서 주베트남 미군사령부(MAC-V)의 관계자와 남베트남군의 관계자를 만나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활동할 위치 및 운영체제 및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현지 협조에 착수했다.

선발대가 본국에서 출발할 당시 미군으로부터 통보 받은 이동외과병원의 위치는 남베트남의 델타지역에 위치한 속짱(Soc Trang)²⁴⁾ 부근이었다. 미

규정, 대통령령1895호, 1964. 7. 28 : 해외파견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었다. 1963년 5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338호의 제17조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근거에 의거 대통령령 제1895호는 "일일(1日) 근무에 대해 계급별 전투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급별 지급액을 1일 기준, 대령 7\$~이병 0.6\$로 편성했으나, (미군과 협의 결과에 의해) 1964년 9월 10일, 대통령령 제1930호에 의해 동1895호의 계급별 지급액을 개정하여, 제2차 파병시 미군측과 합의한 액수와 일치시켰다. 따라서 전투수당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규정과 개정 과정을 볼 때 미군측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3) 8월정변 : 1965년 10월 26일, 남베트남에 베트남공화국을 건국하고 집권한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정부가 대통령측근에 의한 독재와 부패로 인해 국민의 신망을 잃게 되자, 1963년 11월 1일 즈영반민(Duong Van Minh) 장군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후 1964년 1월 30일에는 다시 응웬칸(Nguyen Khanh) 장군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칸 장군은 통킹만 사태를 계기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사평의회 의장, 3군 총사령관까지 겸무하는 독재권력의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자신이 취임했으나, 전국적인 소요사태로 인해 대통령에 취임한지 불과 10일만인 8월 25일 몰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를 '8월정변'이라고 부른다. 그후 남베트남은 계속되는 정권 교체로 지엠 정권 붕괴 이후부터 1967년 9월, 응웬반티우(Nguyen Van Thieu)가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기까지 총 10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군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선발대가 남베트남군 관계자를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전하자, 그는 “이동외과병원을 사이공 남쪽의 미토(My Tho)²⁵⁾ 지역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만약 미토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봉따우(Vung Tau)가 어떻겠느냐?”라며 미군과 다른 장소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미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에는 한국군 이동외과병원의 운용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제의에 따라 병원후보지 3개소를 모두 방문하여 확인한 선발대는 봉따우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그리고 3국 연합회의에서 남베트남군 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한국측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어서 병원의 운영을 위한 작전통제권에 대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각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둘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측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군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각종 지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병원의 운영 통제에 관한 부분은 미군측의 주장에 동의함으로써 미군 통제하에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비둘기부대를 파병하는 제2차 파병부터는 제1차 파병과는 달리 파병 부대의 규모, 각종 지원사항 등에 대해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국방부는 “건설지원단 파병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월 22일, 김종오 합참의장을 주한미군사령관 하워즈 대장에게 보내 구체적인 파병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하워즈 대장은 12월 25일, 김종오 대장에게 실무각서(Aide Memoire)를 보내 왔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다음의 실무각서 내용과 같이 미국측이 최초 요구했던 파병 규모는 1,000명 수준이었으며, 사전에 합의한 계급별 전투수당(Per Diem) 내역을 최초로 문서에 의

24)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의 남쪽을 관통하는 허우강(Song Hau) 남쪽의 촌락으로, 속짱(Soc Trang)성(省)의 성도(省都)이다.

25) 베트남 남부 메콩 델타의 중앙을 관통하는 띠엔강(Song Tien) 북쪽의 촌락으로, 띠엔지앙(tien Giang)성(省)의 성도(省都)이다. 최근 한국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자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해 통보했다는 사실이다.²⁶⁾

1964. 12. 25

김중요 대장에게 보내는 실무각서(Aide memoire for Gen. Kim Chong Oh)

1. 1964년 12월 22일 오후, 상호간의 짧은 대화에 대한 연장으로서 당시 귀하는 본인에게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부대를 즉각 베트남에 파견하여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부 대	편 성	합 계
1개 육군공병대대	29/554	583
1개 공병야전정비반	2/ 18	20
1개 육군수송중대	5/125	130
1개 해병공병중대(증강)	7/160	167
LST 1척	7/115	122
		1,022

2.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비용부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 일당(Per Diem) :

대령	\$6.50	상사	\$2.50
중령	\$6.00	중사	\$2.00
소령	\$5.50	하사	\$1.50
대위	\$5.00	병장	\$1.20
중위	\$4.50	상병	\$1.10
소위	\$4.00	일병	\$1.00

- b. 현 한국군의 수준을 상회하는 수당 지급(Supplemental subsistence above present budgetary allowances)

26) 이훈섭, 앞의 책, pp. 119~121 ; 주11) 참조.

- c. 정비 및 운영 보급품과 베트남에서의 적절한 보급(Maintenance and operation supplies and applicable logistical support in Vietnam)
~이하 생략~ 27)

주한 미군사령부로부터 이상과 같은 서면통보를 받은 국방부는 미군측에서 제시한 파병안을 검토한 결과, 미군측에서 제안한 1,000명 규모의 부대는 대령급이 지휘하는 순수비전투부대로 미군에 배속되어 운용될 수밖에 없는 부대였다. 또한 건설지원단은 비전투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외과병원과 달리 적의 위협이 상존(常存)한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경계가 필수적이었지만, 경계부대가 편성되지 않아 독립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부대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국방부는 미군측과 협조하여 자체경비를 위해 보병대대를 추가 편성함으로써, 부대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수송을 위한 선박(LST) 역시 1척이 추가되어 2척이 되었다. 또한 부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지에서 한국군사원조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지휘부를 별도로 편성하고, 이에 따르는 각종 지원사항에 합의했다. 그 결과 1,000명 규모의 병력이 2,000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건설지원단에 보병대대를 추가 편성함으로써 최초 의도했던 것과 같은 순수한 비전투부대는 아니었지만, 자체경비를 위해 편성되는 보병부대의 추격권(追擊權)을 제한하는 등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비전투부대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가 가능하도록 장군이 지휘하는 군사원조단 본부가 편성됨으로써 후일 전투부대 파병시 독자적인 지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선례(先例)가 되었다.²⁸⁾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자료집(Howze 대장 서신 : 1964. 12. 25)』, pp. 1~2.

28)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35~48.

3) 비전투부대 파병과 관련된 미국의 지원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

이상과 같은 제1·2차 파병, 즉 비전투부대의 파병과정을 분석해 볼 때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그리고 건설지원단의 파병까지는 인도적 차원의 파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의 파병은 파병을 전제로 한 어떤 대가나 조건도 없이 파병 경비를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파병이었다.

이와 같이 파병조건이 없는 인도적 차원의 파병이었기 때문에 제1차 파병을 위한 선발대는 미국과 협상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의 요구조건들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의 선발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병원의 위치선정과 운영 통제에 대해 한국측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1차 파병시 한·미 관계자의 협상은 차후 파병을 위한 선례가 되어 차후 협상에서 한국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어서 제2차 파병을 위한 협상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제2차 파병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부대의 편성과 전투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최초로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제1차 파병 이전부터 한·미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측이 문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것은 1964년 12월 25일자, 하워즈 대장의 서신이 최초의 사례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1차 파병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정부의 경비를 편성하여 파병되었으며, 제2차 파병시부터는 미국정부로부터 전투수당의 지급을 약속 받아 파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파병된 건설지원단을 용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2차 파병까지는 용병주장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3·4차 파병(전투부대)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용병주장

1) 전투부대 파병 경과 및 파병을 위한 한·미 협상 과정

한국군의 제2차 파병이 있었던 1965년 초, 베트남의 상황은 미국의 강력 한 북쪽에도 불구하고, 호찌민(Ho Chi Minh) 루트를 이용한 북베트남군의 남파가 계속되면서 남부의 곳곳에서 전투가 가열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영향은 동북아시아까지 미쳐 한국의 안보상황도 평탄치 못했다. 당시 미국정부는 본토의 예비병력과 해외 주둔군의 일부를 베트남전쟁에 투입했 기 때문에 주한 미군 2개 사단도 언제 남베트남으로 이동시킬지 모르는 상 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1965년 초부터 '한국군 1개 사단의 파병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해 왔다. 이때 미국의 입 장을 확인한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박대통령에게 전투부대 파병을 전제로 한 대미 협상을 건의했다.²⁹⁾

이장관의 건의를 접수한 박대통령은 "미국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우 리가 타산적으로 나간다면 너무 야박하지 않는가? 먼저 파병하고 협상을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으나, 이장관은 "월남은 전쟁터이지만 한편 으로는 시장이다. 파병을 하고 나면 협상이 어렵다"라고 주장하여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냈다. 한국정부의 파병정책이 "국가안보 및 자유우방에 대한 보 답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최대화한다"는 정책을 추가하게 된 계기다.³⁰⁾

정부의 이 같은 정책변화에 따라 3월 15일, 박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장관은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전투부대

29) 이동원, 3공외교비화(국민일보, '그 역사 그 현장' : 1989. 12. 12~12. 18)

30)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통권 제30.2호, 1996, p. 267~287 : 최동주 교수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동기를 '개발지향형 국가 의 전형적인 신중상주의적 외교행위'로 분석했다. 또한 제3차 파병의 이면 합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의 목표는 경제적 이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파병의 조건으로 ① 한국군 현대화를 지원할 것. ② 북한군 침공시 미군이 즉각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 방위조약을 개정할 것. ③ 한국군 파병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할 것. ④ 한국의 월남 시장 진출을 보장할 것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³¹⁾

이장관이 러스크 미 국무장관과 브라운 주한 대사에게 제시하였던 요구 사항은 1965년 5월 17~18일, 양일간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타결되었다. 또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제공도 합의했다. 미국과 협상 진척에 따라 정부는 8월 13일, 전투부대 파병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수도사단(-1)³²⁾과 제2해병여단의 파병을 결정했다. 이후 파병준비를 마친 제2해병여단이 10월 9일 캄란(Cam Ranh)에 상륙하고, 이어서 수도사단이 11월 1일까지 꾸년(Quy Nhon)에 상륙함으로써, 제3차 파병이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국군의 제3차 파병으로 남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눈부신 활약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미국정부는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를 추진하면서 대규모의 전투병력이 소요되었지만, 보충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베트남의 “작전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했다. 미국의 요청을 접수한 한국정부는 “5만명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개 사단의 증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투부대의 파병을 조건으로 경제적 실리를 최대화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쉽게 응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따라 1965년 12월,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訪美)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3차 파병시 합의했던 한국측 요구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

31)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992, pp. 103~118.

32) 수도사단은 제1·26·기갑연대 등 3개 연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3차 파병의 규모를 1개 사단 규모로 제한했기 때문에 제2해병여단을 포함시킨 만큼 수도사단 3개 연대 중 1개 연대를 제외한 수도사단(-1)을 파병했다. 이에 따라 제26연대는 본국에 잔류하게 되었으며, 제4차 파병과 연계하여 1966년 4월에 파병되어 수도사단에 합류했다.

기 때문에 이장관은 '선(先) 약속이행, 후(後) 증파'를 주장한 반면, 미국측은 '선 증파, 후 약속이행'을 주장하여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존슨 미 대통령은 1966년 1월 1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 전투부대 증파를 요청했다. 외교관례를 무시한 신정(新正)의 특사 방문은 미국측의 다급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어서 정부는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의 수상 응웬까오끼(Nguyen Cao Ky) 소장으로부터 1개 전투사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公翰)을 접수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월 23일, 다시 방한한 험프리 부통령과 한국군 하위직의 전투수당 인상, 그리고 한국의 남베트남 수출품목을 200여 종으로 대폭 늘리는 것 등의 현안과 함께 한국의 안보문제에 합의함으로써, 회담이 급진전되었다. 이어서 이동원 장관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 대사는 이제까지의 회담결과를 기초로 '한·미 합의의사록'을 작성해 서명했다. 제3차 파병시 미국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후 정부는 3월 7일, 3월 4일자로 작성된 '브라운 각서'를 접수했는데, 브라운 각서는 앞서 작성된 합의의사록을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 한국군 현대화 지원 등을 합의의사록보다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었다.³³⁾ 이어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투부대 증파 동의안은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만의 단독표결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 제26연대는 4월 15일, 끼년에 상륙하고, 제9사단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Ninh Hoa)일대에 전개했다. 그 결과 주베트남 한국군은 군단급 규모의 제대로 확장되어 명실공히 독립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pp. 264~267; 국회입법조사국,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명팅위원회 청문록: 입법참고자료 제140호)』, pp. 20~33.

2)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된 미국의 지원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한·미 협상 과정을 분석해 볼 때, 한국정부는 전투부대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정부에 군사원조 증가, 군원이관 중지 등을 요구하여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전투수당 인상과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획득, 그리고 베트남의 시장진출 등 베트남전쟁 특수를 획득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러나 전투부대 파병 협상을 경제적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제1·2차 파병과는 달리 “파병된 한국군 전투부대가 용병이었다”라는 주장이 대두되는 배경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4장에서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된 미국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전통제권 문제와 함께 용병주장과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4. 전투수당 및 경제적 지원과 용병주장의 상관관계

(1) 참전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전투수당과 용병주장

전투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급여(給與) 혜택은 전투수당의 지급과 봉급의 호봉을 2~3배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이 중 전투수당은 전투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으로 1964년 9월 11일,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과 관계없이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그러나 제2차로 건설지원단의 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장

기간 파병될 경우, 한국정부의 지불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파병을 위한 한·미간의 사전 협의로, 주한미군사령관 하위즈 대장이 김종오 합참의장에게 보내온 실무각서(Aide Memoire) 제2항에 따라 파병되는 참전용사의 전투수당 문제가 최초로 제시된 것이다.

당시 미국측의 최초 문서에는 제2차 파병의 규모를 1,000명 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준장의 전투수당이 누락되어 있었고, 준위의 경우도 언급이 없었다. 이에 따라 1965년 1월 8일, 국방부는 미군측에 준장 10\$, 준위 3.5\$의 전투수당을 요청했다. 이 같은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 미군측은 1965년 1월 15일, 계급간 차등액 50Cent의 기준에 의해 준장 7\$, 준위 3.5\$의 책정을 통보해 왔다.

이어서 <표 1>과 같이 1965년 10월 11일, 수도사단이 파병되면서 소장 7.5\$의 수당액이 신설되었다. 또한 1966년 전투부대 중과(제9사단 파병)에 따라 중장의 전투수당 10\$을 신설하고, 소장의 전투수당을 7.5\$에서 8.0\$로 조정했다. 그리고 하급 직위자의 사기 양양차원에서 하사~이병까지의 수당을 인상하여 각각 196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³⁴⁾

한편 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던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과 장병들의 급료는 <표 2~3>에 제시된 군인 봉급표와 환율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당시 이등병의 월 지급액은 1불에 불과 했으며, 중장의 경우도 175불 정도로, 장교들의 경우

34) 국회 입법조사국, 앞의 책(사이밍턴위원회 청문록), 1971, pp. 76~84 : 사이밍턴 청문록은 미 상원의교위원회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사이밍턴 의원)에서 1970년 2월 24일부터 3일간 한국의 베트남 파병 및 안보정세와 관련해 열렸던 청문회의 기록이다. 이 청문록에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공약 및 조치,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공약 및 조치사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한국군에 대한 전투수당의 지급문제 등 미국의 대한(對韓) 지원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참전용사들이 주장, 즉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의 일부만을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문서다.

<표 1> 전투수당 조정내용

(단위 : 달러)

구분	건설지원단 파병		수도사단 파병	제9사단 파병		최종 시행액	월 (30일) 기준액
	최초책정 (1964.12.25)	계급 추가#1 (1965. 1.15)	계급 추가#2 (1965.10.11)	계급 추가#3 (1966. 7. 1)	하위직 인상 (1966. 7. 1)		
중장				10.00		10.00	300
소장			7.50	8.00		8.00	240
준장		7.00				7.00	210
대령	6.50					6.50	195
중령	6.00					6.00	180
소령	5.50					5.50	165
대위	5.00					5.00	150
중위	4.50					4.50	135
소위	4.00					4.00	120
준위		3.50				3.50	105
상사	2.50					2.50	75
중사	2.00					2.00	60
하사	1.50				1.90	1.90	57
병장	1.20				1.80	1.80	54
상병	1.10				1.50	1.50	45
일병	1.00				1.35	1.35	40.5
이병					1.25	1.25	37.5

자료 출처 : 사이밍턴 청문록, pp. 76~84 내용 요약 정리.

는 자신이 지급 받는 전투수당의 1/2~1/3 정도의 월급을 지급 받고 있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될 당시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은 당시 한국의 경제수준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액수의 금액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전투수당이 장병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의 큰 액수는 아니었다.

<표 2> 당시 군인 봉급표(1966. 1. 1~1967. 3. 1)

구 분	월 지급액(원)	달러 환산액	구 분	월 지급액(원)	달러 환산액
중 장	45,120	177	준위8호	13,600	53
소장3호	36,320	142	상사8호	10,180	40
준장3호	32,000	125	중사5호	7,470	29
대령5호	29,440	115	하사3호	3,490	14
중령5호	23,040	90	병 장	400	1.6
소령5호	18,720	73	상 병	360	1.4
대위3호	12,240	48	일 병	300	1.2
중위2호	9,080	36	이 병	260	1.0
소위1호	8,560	34			

자료 출처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1950~1998)』, 1999, pp. 50~57. 요약 정리.

<표 3> 당시 환율(1달러 : 원)

연도	1963	1966	1967	1969	1970	1971	1972	1973
1\$: 원	255	255	275	275	290	320	320	345

자료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 248.

따라서 전투수당이 가난했던 나라의 장병들을 파병지원서에 서명하게 하였던 하나의 유인책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전투수당만으로 파병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외에도 당시 기회가 거의 없었던 해외경험을 얻는 것과 직업군인들의 경우, 전투지역에 근무함으로써 호봉의 합산과 함께 경험과 경력을 쌓아 차후 진급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하고자 하는 등의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요소는 파병을 자원(自願)하지 않았던 장병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병된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자원의 경우에도 “국가의

명에 의해 공산주의 침략을 물리친다”는 충성심과 사명감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제1차 파병 당시의 전투수당은 한국정부에 의해 지급되었으며, 제2차 파병시부터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정부가 지급해야 할 전투수당을 우리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미국정부가 대신 지급해 준 것으로, 당시 미국정부는 안보동맹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전투수당 외에도 각종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파병된 한국군의 입장과 용병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협약추가 제1의정서의 규정을 적용해 분석한다면, 파병된 한국군이 “본질적으로 사적(私的) 이득을 위한 욕망에 의해(Essentially by the desire for private gain)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했는가?”에 대한 답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한국군 병사가 미국정부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급료보다 50배 이상의 전투수당을 받고 참전했기 때문에 용병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사적 이득을 위한 욕망에 의해 참전한 경우에 한해 용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당시 한국군은 자원(自願)에 의해 파병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징집에 의해 병역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의 군대로써, 국가의 명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참전했다. 따라서 개개인의 장병이 사적 이익을 위해 참전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돌당사자로부터 또는 충돌당사자를 대신하는 자로부터 동 당사자의 군대 내의 동일한 계급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불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사실상 약속 받고 있는 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의 군대라 함은 한국군의 경우 전투수당을 제공한 미국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미군 병사(병장)의 급료와 전투수당은 30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군이 받았던 50달러 내외의 전투수당은 그들의 급료를 초과하기는 커

녕 1/6에 불과한 금액인 것이다.

(2)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경제적 효과와 용병주장

한국군의 파병을 전제로 하는 미국의 지원은 전투사단을 파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유·무상 차관 제공, 군사원조, 군원이관 중지 등의 직접지원과 대한(對韓) 물자 구매, 베트남 수출 지원 등의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차관의 도입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증가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당시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는 6·25전쟁의 휴전과 함께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특히 1958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원조가 다시 증가했다. <표 4>와 같

<표 4> 1956년~75년 기간 중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 원조

(단위 : 백만 달러)

베트남 파병 이전		베트남 파병 기간		베트남 철군 이후	
연 도	액 수	연 도	액 수	연 도	액 수
1956	226	1965	173	1974	157
1957	262	1966	210	1975	145
1958	331	1967	272		
1959	189	1968	389		
1960	184	1969	480		
1961	200	1970	330		
1962	137	1971	556		
1963	183	1972	532		
1964	124	1973	363		
연평균	204	연평균	367	연평균	151

자료 출처 : 김기태, 『한국의 베트남 참전과 한미관계』, 박사학위 논문, 1982. p. 140.

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파병 이전과 철군 이후를 연도별로 보면, 파병기간 중에 대폭 증대되었으나 철군이후에는 다시 대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라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군사원조 증가액은 년 평균 1억 달러를 상회하며, 9년 동안 약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 군원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에는 군사원조와 함께 군원이관 중지가 포함되어있었다. 군원이관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정부가 우방국의 전후 복구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제공해 오던 군사원조 중 피 지원국에서 생산 및 조달이 가능한 물자를 피 지원국의 재정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자국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1959년 3월, 미국측의 제의에 따라 군원이관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피복, 급식, 개인장구류, 사무용품, 타이어, 의약품, 건설자재 등을 한국측에 이관하는 군원이관계획이 작성되었으며, 1960년도분 940만 달러와 1961년도분 140만 달러가 한국측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1961년 11월 14일, 당시 박정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군원이관계획의 시행중단을 요청함으로써 1962년부터 1963년까지 2년동안 중지되었다.³⁵⁾ 그후 미국측은 1964년부터 다시 군원이관 문제를 제기하여 1964년부터 1970년까지 년차적으로 군원이관을 요구하였고, 한국측은 베트남 파병문제와 연계하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표 5>와 같이 1966~70년까지 군원이관이 중지되었다.

그후 한국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파병되었던 한국군의 1단계 철수가 시작된 1971년부터 다시 군원이관이 재개되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절약된 국방비는 <표 6>과 같이 9,310만 달러에 달한다.

35) 신종호, 『한국군의 월남참전과 한국에 미친 영향』, 충성대연구소, 2000, pp. 49~50.

<표 5> 한국측이 제시한 군원이관 제시액 및 조정액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이관 품목	제시액	조정액	비 고
1964	대두 · 개인장구 · 사무용품	2.8	2.8	이관
1965	타이어 · 튜브 · 원면	5.1	5.1	
1966	건설자재(시멘트 · 판유리), 차량 배터리	2.7	4.6	이관 중지
1967	모포(가공비)	1.1	5.6	
1968	유류	3.2	8.2	
1969	유류	3.3	8.7	
1970	유류	3.3	5.7	
1971	사무용품 · 개인장구류	3.4	8.4	이관 재개
1972	고무 및 고무제품	3.1	8.4	
1973	의약품 · 정비자재	3.1		
1974	포장재료	3.3		
1975	정비자재(2차분)	3.0		
계		37.4	57.5	

자료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 261.

<표 6> 군원이관 조정으로 절약된 국방비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회계 년도						비 고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증 가 액	4.6	5.6	8.2	8.7	5.7		1971 · 1972년도 계획 각 840만 달러는 한국군의 철수에 따라 군원이관 시행
연간총액	4.6	10.2	18.4	27.1	32.8	93.1	

자료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 261.

한편 한국군의 파병에 따라 한국군과 관련된 미국정부의 국방비 지출 내역은 <표 7>과 같다. 이 표는 1965~70년까지 6년간에 걸친 전투수당, 군사원조, 군원이관 등으로 인한 미국의 지출과 함께 대한(對韓)구매, 한국업체의 진출에 따른 지출 내역 등을 보여 준다

<표 7> 미국정부의 경비지출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지원 종류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계	926.9						
예비사단용 장비	6.40		6.40				
해외복무 수당	130.1	0.367	8.863	29.754	35.848	37.036	18.200
전사상자 보상	10.5		0.654	1.690	3.439	2.872	1.800
군 출동 배치	5.3		3.900	0.700	0.700		
한국군 현대화	20.0		10.0	10.0			
순 경비 재정 증대	44.8			5.896	14.713	14.824	9.4
부대재편성	51.9		25.600	4.800	9.800	7.400	4.3
기부금	6.5		0.200	0.200	5.400	0.500	0.2
조병창 확장	2.6			2.600			
전용 체신선	1.7			1.314		0.007	0.38
C-54기 4대 유지	3.8		1.200	0.600	0.400	1.200	0.400
군원 잉여물자 판매 대전	1.7			0.657	0.583		0.477
군원이관 중단	93.2		4.600	10.300	18.400	27.100	32.800
전투식량 보급	24.0				6.100	12.300	5.600
대한 구매	50.8		9.6	11.9	15.2	9.1	5.0
한국업자 진출 증가	305.4						
미 군용물자용역구매	144.0		32.0	32.0	32.0	32.0	16.0
군수물자 해상수송	13.6		3.0	3.0	3.0	3.0	1.6
출장 휴가 지원, 기타 원조	10.6	0.09	0.7	1.6	2.9	3.1	2.2

자료 출처 : 사이밍턴 청문록 p. 85 내용 요약 정리.

이상과 같은 미국의 직접지원 및 지출과 함께 베트남 전쟁기간 중 전쟁 특수를 이용해 한국이 남베트남으로부터 획득한 외화 수입은 <표 8>과 같다.

<표 8> 베트남 전쟁 특수를 이용한 한국의 외화수입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금 액	%								
계		1036.0	100	19.5	62.2	146.8	168.7	205.5	207.8	139.0	83.2
무역	소 계	283.1	27.3	17.7	23.8	23.2	38.0	47.1	70.1	35.7	27.5
	상업수출	94.3	9.1	14.8	13.9	7.3	5.6	12.9	12.8	14.5	12.5
	물품군납	188.8	18.2	2.8	9.9	15.9	32.4	34.2	57.3	21.2	15.0
무역외	소 계	752.9	72.7	1.8	38.4	123.6	130.7	158.4	137.9	103.3	55.7
	건설업	61.7	5.9	0	3.3	14.2	14.2	11.5	10.7	8.5	3.1
	장병송금	201.5	19.4	1.8	15.5	31.4	31.4	33.9	30.6	32.3	26.8
	근로자송금	166.2	16.0		9.1	34.3	33.6	43.1	26.9	15.3	3.9
	사상보상금	65.3	6.3		1.1	4.6	4.6	10.8	15.2	13.9	12.0
	서비스업	238.8	23.1		8.3	35.5	35.5	55.3	52.4	32.0	9.2
	지급보험금	19.4	1.9		1.1	4.6	4.6	3.8	2.1	1.3	0.7

자료 출처 :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제11호, 2001, p. 212.

결과적으로 한국정부가 국군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직접 지원으로 군사원조 및 군원이 관 중단과 파월장병들에게 지급된 전투수당의 송금, 그리고 간접지원으로 미국과 남베트남에 대한 수출 증가, 국내기업과 근로자의 남베트남 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한다면 총 외화수입은 5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큰 효과는 외화의 국내유입으로 발생 가능성이 농후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물론, 외국의 차관 및 투자 증가,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인한 경기 활성화와 아울러 기업의 해외 진출 경험 획득 등 간접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효과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지배와 핍박을 받고 나서 장기간 끈질긴 교섭 끝에 대일 청구권자금으로 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도합 8억 달러의 외화를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파병의 경제적 효과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용병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또한 그중 일부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하여 젊은이들의 피를 혈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용병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 역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과 같이 비전투부대인 이동외과병원과 건설지원단의 파병으로 “6·25전쟁시 도와주었던 자유우방의 은혜와 도의적 의무를 일정부분 이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을 주한미군에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의 존망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어차피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면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획득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미 협상 방침이었으며, 또한 당연한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전투부대 파병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적 실리를 최대화하고, 베트남의 전쟁 특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당시 박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최대 업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국가간의 외교적 협상에 의해 파병된 군대가 침략군으로 비난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용병으로 매도된 경우는 없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파병된 한국군이 현지의 양민을 학살하는 등 무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용병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백인 용병들이 현지 식민지인들에 대해 인종차별과 함께 잔인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용병이론에 의한 논리적 해석이 아닌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에 속한다. 잔인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병이 될 수는 없다. 용병과 잔인한 행위는 별개의 사안인 것이다. 또한 ‘양민학살’과 관련된 사살관계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다.

(3) 군대의 작전 통제권과 용병이론의 상관관계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용병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한국군의 파병과 파병 후 작전활동을 광범위하게 고찰하지 못한 채 미국의 지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용병의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논하기 위해서는 급료의 문제와 함께 운용의 자율성, 즉 작전 통제권의 운용실태를 분석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용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높은 급료를 받은 만큼 급료 지불자의 뜻에 따라 로봇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는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지시에 따라 로봇과 같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용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미군의 수족노릇을 했는가?, 아니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술에 의해 작전에 임했는가?”에 따라 ‘용병’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파병부대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었다. 제1차 파병인 이동외과병원 태권도 교관단의 파병에 따른 작전 지휘권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남베트남측에서는 각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를 원했으나 한국측은 이들의 요구를 조정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의 지휘하,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두도록 했다. 한국측에서 부대의 안전과 지원관계를 고려,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국측 의견에 따라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운용된 것이다.

용병의 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동외과병원이야말로 용병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제1차 파병의 경우 전투수당의 지급 등 경제적 혜택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용병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2차 파병인 비둘기부대 파병시 한국측의 방침은 제1차 파병과 동일하게 주베트남 한국 대사의 지휘하, 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두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과 남베트남측은 각각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고자했다. 그런데 당시 특이한 상황변화가 있었다. 남베트남 정부의 군사쿠데타와 관련하여 미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격심한 알력이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장악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작전통제권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미군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군들은 한국군 비전투부대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어 남베트남측과 알력을 심화시키기보다는 남베트남군의 통제하에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측의 입장은 부대의 안전과 지원측면을 고려해 볼 때 남베트남군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을 어느 특정국가의 작전통제하에 두기보다는 한·미·월 3국의 협조기구(Troika System)에 의해 3국의 합의하에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관철시켰다.

이어서 1965년 9월, 전투부대의 파병인 제3차 파병이 있었는데, 전투부대의 작전통제권협상은 비전투부대 파병시 미국의 양보로 비교적 용이하게 한국측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과 양상이 판이하게 달랐다. 베트남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미군들은 전쟁의 기본원칙인 지휘통일의 원칙을 내세워 한사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확보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작전부대의 지휘통제를 일원화하여 작전에 임하는 지휘통일의 원칙은 전쟁의 원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다.

한국측 입장에서 볼 때도 본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1950년 7월 13일 이후 미군에게 이양되어 있었고, 베트남의 파병 역시 미군의 요구하에 파병되었으며, 미군의 지원이 없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지휘통제하에 작전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경우 한국전쟁시 유엔군사령부와 같은 연합군사령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이양할 경우 그야말로 명실공히 용병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최초 전투부대 파병 협상시 “파병되는 한국군을 미군의 작전지휘하에 둔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협조하는 실무자들과 주베트남 한국군 사령부의 입장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⁶⁾ 당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 협상과 관련된 이훈섭, 웨스트모랜드 장군의 증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병되는 주월 한국군의 작전권을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락장교단이 출발할 때까지 본국에서 받은 지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상하되 안되면 본국정부에 떠 넘기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도록 관철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당한 대가로 타협하겠다는 뜻이었다.³⁷⁾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나에게 ‘한국군을 귀하의 지휘하에 놓아두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위신을 보유하려는 신생공화국 한국인의 열망을 존중했고, 한국지휘관들과는 협조적인 기반 위에서 일했다. 한국군에게는 독립적인 책임지역을 할애하여 광범위한 지침 안에서 절반은 자치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했다.”³⁸⁾

36) 최용호, 앞의 책, pp. 49~52, 이세호 장군의 증언.

37) 최용호, 앞의 책, p. 44, 이훈섭 장군의 증언.

38) William C. Westmoreland(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하였는가』, 광명출판사, 1976, pp. 157~158.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파병될 당시 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전평시 공히 주한 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에서 모든 작전요소의 작전권을 통합하려는 미군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남베트남군의 견제와 정치적 상황을 적절히 이용했고, 제2차 비둘기부대 파병의 선례(Troika System)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이양' 언질에도 불구하고 현 지 사령관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예상되는 용병시비를 미연에 차단하고, 자유우방의 일원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으며, 독자적인 전술로 작전성과를 증대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차후 해외 파병시 독자적인 작전권 확보의 선례를 남겼으며, 국내의 작전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했던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한국군의 파병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9> 용병(傭兵, Mercenary Soldier)의 조건과 파병된 한국군 비교

조 건	일반적인 용병(傭兵)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주 체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의사	국가(국민 개병주의, 강제징집)에 의한 파병
매 개 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액의 보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연장선 사기향상을 위한 적정액의 수당
작전목적	고용한 단체 또는 국가의 목적에 무조건 추종(충성심이 없음)	우방의 공산주의 침략 격퇴 한반도의 안전보장체제 유지
작전수행	고용한 단체 또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명령에 의해 작전	독자적인 작전권과 전술에 의해 독자적, 또는 상호 협조된 작전

5. 맺 음 말

1964년 9월~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계속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당시의 박정희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동시에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돌파구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6·25전쟁시 혈맹의 지원에 보답한다”는 국제적 신의의 차원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될 경우 그 여파가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국가안보의 연장선에서 파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미 협상 전략을 구사(驅使)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한국의 전략은 적중하여 동북아의 취약 국가로 평가되던 위치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함은 물론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과 전쟁 특수에 의한 외화 수입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한국군의 파병은 국제적으로 비동맹그룹과 대결구도를 가속화함과 아울러 미국의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국내적으로 5,000여 명의 전사망자와 11,000여 명의 부상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고엽제 문제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오늘날까지 이어진 ‘용병’시비와 전후 처리문제 등은 국론 분열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상원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미국은 한국군을 용병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시켰다”³⁹⁾라고 비난했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

39) 국회입법조사국, 앞의 책(사이명턴 청문록), p. 73·77·78: 사이명턴 청문회에서 폴브라이트의원과 사이명턴 의원 등이 한국군의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 및 전투수당에 대해 “상거래(商去來), 또는 용병(傭兵)이 아니었는가?” 등으로 질의하자 주한 미 대사를 역임한 브라운과 현직 대사인 포터, 그리고 미 국무성 사회담당국무차관보 등은 “해외근무를 원하는 지원병을 위한 적절한 보상책이었다”라고 답변했다.

교 12년째를 맞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참전에 대해 “한국의 군대가 참전한 것이 아니며, 박정희 군대가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한 것이다”⁴⁰⁾라고 혹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이론적, 논리적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다분히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利益)에 입각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에 따라 그들의 평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히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굳건히 하고, 국방력 증진과 함께 획득된 외화를 이용한 경제개발로 국가부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참전장병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높은 금액의 전투수당을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의 대한(對韓) 지원은 안보동맹국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전투수당은 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차원의 수당이었다”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전투수당 지급만으로 파병된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파병된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술에 의해 독립된 작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용병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용병, 베트남에서 한국군, 미국정부의 지원, 용병주장, 전투수당

4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외군사연구기관 방문 자료철 : 2002년 5월 7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필자가 베트남 국방부와 사회인문과학원을 방문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을 때 응웬주이꾸이(Nguyen Duy Quy) 사회인문과학원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ABSTRACT>

The Critical Analysis of Assertion, ROKA of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as ‘Mercenary Soldiers’

CHOI, YONG-HO

In Korea, Some scholars call that ROK soldiers in Vietnam are American mercenary soldiers. In this case, the terminology, mercenary, indicates the soldier who is not forced, and work on own will for own profit.

Regardless, some scholars who call ROK soldier in Vietnam as a mercenary claim that ROK soldiers were paid by American and got into the war so they were mercenaries. Also, they claim that ROK soldier committed atrocities because they were mercenaries.

We need the analysis as follows to prove whether ROK soldiers in Vietnam were mercenaries or not. The first, we need to look at the relation carefully about ROK-US government negotiation, the US government support and the mercenary's claim. Also, we have to analyze Korean government's economic effects from combat wage through detachment and the mercenary's claim. At last, because who has operational control is very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presence of a mercenary, ROK army operational control related matter has t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view, Korean government pushed ahead the detachment as national profit, and decided to detach through autonomous decision. Also, we analyze that Korea gained 50 billion dollar worth of economic effects through the negotiation with the US in the preassumption of detachment to Vietnam.

In the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national rise using support of the US related Vietnam detachment. Also, soldiers were paid relatively high price of combat wage. However, it is verified that the US support was just support as a security ally, and the combat wage was paid to raise the spirit of soldiers on the field.

Therefore, we can not conclude that ROK army was mercenary only because of the US economic support and combat wage. Especially, ROK army had independent operational control with independent tactic.

Key Words : Mercenary, ROK soldiers in Vietnam, US government support, Mercenary's claim, Combat wage.